

자연의 권리

강재규*

차례

- I. 들어가며
- II. 자연의 권리론의 역사적 발전
- III. 각국의 “자연의 권리” 소송 사례
- IV. “자연의 권리” 소송의 가능성
- V. 맺음말

I.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야생동식물 등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을 원고로 하는 “자연의 권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의 권리”소송은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전의 소송과는 전혀 다른 소송목적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자연보호소송”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물에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생소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위기나 자연보호를 위한 법제의 흠결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제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정책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흡하지만 입법화되기도 하였으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1) 이에 대해서는 강재규, 『생태주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2), 115쪽 이하 참조.

2) 자연의 권리의 주체성에 대하여,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관해서는,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때에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옛날부터 논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지만, 서구에서는 17세기 무렵부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³⁾ 하지만 “의무”, “책임”,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양하여 혼란스럽기까지 하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물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양자택일적인 논의가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어떠한 절차로, 무엇(누구)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라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상과 같은 ‘자연의 권리’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 각국의 자연의 권리 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자연의 권리소송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자연의 권리론의 역사적 발전

1. 개설

산업혁명은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진보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계속 증대시키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들어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인류의 발전이란 자연환경의 파괴를 담보로 한 것이었고, 물질문명의 발전은 자연에 대한 부하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즉 오늘날 인류는 환경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 제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

제』(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6쪽 이하 참조.

3) John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G. Duckworth & Co. Ltd.(1974).

4) 山村恒年, 『環境保護の法と政策』(信山社, 1996), 117쪽.

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연의 권리”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 영역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의 방향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논리라 생각된다.

2. 자연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자연의 권리”란 자연에는 자연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자연을 대변하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아마도 불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사상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⁵⁾

자연은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획득하게 된 생물, 비 생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 받지 않은 채,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과학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 나아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과 같은 초월적인 가치까지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더구나 요즘은 생물, 비 생물 간의 상호 관련성, 특히 지구규모에서의 상호 관련성까지 밝혀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비 생물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자연으로부터 물질적, 문화적, 생물학적인 자산을 취득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구 전체에 엄청난 영

5) 그러나 籠橋隆明 변호사는, “자연의 권리”는 위스콘신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엘드 레오폴드(Aldo Leopold)가 1949년에 쓴 “A Sand County Almanac” 저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籠橋隆明(淡路剛久·寺西俊一編), 『自然の權利 訴訟と市民の權利』,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日本評論社, 1997), 292쪽 참조. 레오폴드는 이 책에서 “land eth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land ethics”이란 공동체라는 틀을 토양이나 물, 식물, 동물 또는 이들을 총칭하는 ‘토지’에 까지 확대한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land ethics”은 사람이라는 種의 역할을, 토지라는 공동체의 정부자로부터 평범한 일원, 하나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구성원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라고 한다. 森島明譯, 『野生のうたが聞こえる』(森林書房) 참조. 자연을 공동체라고 생각한 것, 인간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창한 이러한 사고는, 그 후의 환경보호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대지(토지)의 윤리라는 사고는, 생태학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과학을 배경으로 환경보호사상을 전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소개로는, Zygmunt J. B. Plater and et 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a Coursebook on Nature, Law, and Society*, at 6-7, 11-15(West Pub. Co. 1992).

향력을 미쳐, 지구상의 많은 야생생물을 멸종시켜 왔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할 때, 다른 생물 종의 멸종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절멸을 부를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하여 계 자체로서 그대로 보호하려는 사고가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오늘날 환경보호정책을 떠받치는 주류적 사고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즉 심미적 가치가 있으므로 보호하여야 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니라, 생태계로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서 자연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인간에게는 자연 그 자체를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환경보호사상은 자연이란 어떠한 생명체라도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자연의 공공적 의의에 대해서도 자연이 갖는 자원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⁶⁾.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자연과 일체화된 자연보호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란 바로 이상과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자연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3. 환경윤리사상의 발전

이상과 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⁷⁾에 대해서는 환경윤리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차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법과 윤리의 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이 없지는 않지만, 철학적·윤리학적 대상과 관점은 법 이론과 법 해석 및 법의 근거부여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규범이 법적 권리로 형성되기 전에 먼저 윤

6) 鬼頭秀一, 『自然保護を問いなおす』(ちくま新書, 1996), 34쪽; 岡島成行, 『アメリカの自然保護運動』(岩波新書), 143쪽 이하.

7) 자연은 인간의 ① 생물학적 생존의 기초이고, ② 진화의 기반임과 동시에, ③ 일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이다. 다른 한편 ④ 인간의 정신활동·언어활동을 신체라고 하는 자연성을 불가결한 전제로 하고, 자연은 인간의 정신활동·문화의 기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연은 인간 외부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일체의 것·인간의 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山田隆夫, 『奄美自然の權利訴訟の提起するもの』, 『自由と正義』 제49권 제10호(1998. 10), 14-23쪽 참조.

리, 도덕 및 철학적 측면에서 그 규범성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윤리의 진화과정을 검토하는 것도 권리의 이해에 유익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윤리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의 윤리로는 자아에 기초한 자기중심적 윤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자유방임자본주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등장과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 주류 산업자본주의의 윤리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선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윤리는 사회 생태론자, 좌파 녹색주의자, 사회적 사회주의 여성 생태론자, 제2세계와 제3세계의 환경주의자, 그리고 주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운동들과 같이, 그 주된 목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로 설정되어 있는 생태운동들에 내재해 있다. 이어서 우주 내지는 생태계 전체에 기초한 생태중심적 윤리는 대부분의 근본 생태론자, 영성생태론자, 녹색주의자, 문화적 여성생태론자, 유기농 농민, 생태지역주의자, 그리고 대부분의 토착민 운동 등의 사고를 이끌고 있다.⁸⁾

정리하면 윤리사상은 자기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 생태중심주의(자연중심주의) 윤리사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천에 대해서는 패스 모어나 내이쉬의 저서⁹⁾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자기중심주의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이와는 달리 자연(생태)중심주의는 지구를 생물권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그 전체가 정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간 활동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윤리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생태학자 엘도 레오폴드는, 상호 의존하는 개체의 공동체 윤리를 발전시켜서, 토지상의 “생명공동체”를 제창하고, 생태계 전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방향이라면 타당하고, 그 반대의 방향이라면 잘못된 것¹⁰⁾이라고 하였다.

8)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허남혁 옮김 『래디컬에콜로지』 (이후, 2001) 96쪽 이하 참조 ;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제5장 참조.

9) R. F. Nash, *The Rights of Nature :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1993) 참조. 그는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경외의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간다”고 하여, 환경윤리의 역사적 발전에 입각해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개개 자연물이라고 하는 원자론과 전체적 자연중심주의가 뒤섞여 있고, 자연중심주의적 공리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법학의 분야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의 크리스토프 스톤이다.¹¹⁾ 역사적으로는 일부의 인간만이 가졌던 권리가, 오늘날은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에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자연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중심주의사상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톤이 주장한 권리의 주제는 그의 글의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원고적격” 문제였다. 그리고 뒤에서 소개하듯이 일본에서 야생토끼를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역시 소송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자연의 권리는, 자연이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4. 각국의 “자연의 권리”론

(1) 미국

미국에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중요한 문헌으로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스토프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가 1972년에 발표한 “수목의 원고적격(Should Trees Have Standing?)”¹²⁾이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연물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가나 학교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법인격을 가지듯이, 자연물도 법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물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를 가장 잘 배려할 수 있는 사람(또는 단체)이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에도 그 고유한 가치(자연의 권리)가 있으므로, 자연파괴행위는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연보호단체 등은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스톤이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Sierra Club v. Morton* 사건¹³⁾이 연방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이 사건은 시에라 네바다의 미네랄

10) 알도 레오폴드(윤여창·이상원 옮김), 『모래땅의 사계』 (도서출판 푸른 숲, 1999), 270쪽 참조.

11)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강재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환경사상』 (지산, 2001), 128-131쪽 참조.

12) 우리나라에도 최근 번역서가 나왔다. 허범, 『법정에 선 나무들』 (아르케, 2003).

13) 405 U. S. 727(1972). 이 판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이상돈, 『환경정책기본법』 (아세

킹이라는 아름다운 계곡에 월트 디즈니사가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바,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클럽이 리조트 개발에 반대하여 개발허가의 위법 선언을 구한 사건이다. 시에라클럽은 철저하게 자연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술을 펼쳤다. 물론 1972년 4월 19일 연방대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지만, 소수의견을 제시한 더글라스 판사는 스톤의 논문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연의 생태적 균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은, 보호의 대상인 자연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Mineral King 대 Morton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더글라스 판사는 생명이 없는 사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海事訴訟(admiralty suit)에서 선박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였다. 이는 회사가 법적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곡, 산, 강, 호수, 비치, 삼림 등이 스스로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톤의 논문이 가진 의의는 당시까지 윤리의 문제로서만 생각해 왔던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에서 제시된 사고가, 현실성을 띤 사회제도나 법적 제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¹⁴⁾고 한다.

이렇게 하여 자연물을 원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스톤이 논문을 제출한 이후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에 오염된 하천, 해안, 種, 수목의 이름으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 1973년에 이미 ESA가 제정되고,¹⁵⁾ ESA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any person) 국가를 대신하여 시정을

이문화사, 1985), 111-115쪽; 천병태, 『미국행정법』(부산대학교출판부, 1992), 146-152쪽; 강재규, 『미국 환경법과 법원』(세종출판사, 1998), 243쪽 이하 참조. 이 사건에서 Sierra Club의 회원들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하여 The Mineral King Valley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Sierra Club의 변호인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 단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그의 변론의 근거로 내세웠다.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735-36 n. 8(1972) 참조. 요컨대 변호인 측은 동 단체가 어디서나 환경오염을 다룰 수 있도록 항구적인 자격을 부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14) 籠橋隆明, 『앞의 글』, 293쪽 참조.

15) 하원의원 존 던켈은 이 법률의 제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73년 연방의회가 설정한 목표는 전체 역사를 통하여 미증유의 것이었다. 미국은 이 위대한 대지를 공유하여야 할 수많은 생물을 절멸시켜온 수십년 아니 실제로는 몇 세기의 세월과 결별하려고 결의하였다. . . 살아있는 야생종은 아직 읽지 아니한 장서와 같은 것이다. 그들을 아무 생각없이 파괴하는 것은 책을 읽지도 않고 불속에 집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절멸위험에 처한 종의 보존법은 무의미한 파괴에 대한 속수무책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소송(Citizen Suits)¹⁶⁾ 조항을 두게 된다.¹⁷⁾ 이 조항은 자연의 가치를 사람이 대변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민소송조항은 법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자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¹⁸⁾

- 다.” 존 딘켈은 미시건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법률 뿐만 아니라 NEPA, 해양포유류보호법, 대기정화법 등 주요 환경입법의 창시자(아버지)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 법률의 우수성은 ① 인간은 이 법률만큼 자연보호를 위하여 인간의 이익을 희생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② 종의 보존을 위하여 아주 상세한 체계를 구축한 점, ③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을 두고 제정된 점을 든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關根孝道, 『日米“種”の保存法”の比較法的考察』, 『環境法學の生成と未來』(信山社, 1999), 226쪽 이하 참조.
- 16) 시민소송(Citizen Suits)을 규정한 연방법률로는, Toxic Substances Act, 15 U.S.C. § 2619(1988) ;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of 1977, 30, U.S.C. § 1270(1988) ; Clean Water Act of 1976, 33 U.S.C. § 1365(1988) ;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of 1972, 33 U.S.C. § 1415(g)(1)(1988) ; 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 300j-8(1988) ; Noise Control Act of 1972, 42 U.S.C. § 4911(1988) ;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42 U.S.C. § 6305(1988) ; Solid Waste Disposal Act, 42 U.S.C. § 6972(1988) ; Clean Air Act, 42 U.S.C. § 7604(1988 and Supp. 1990)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42 U.S.C. § 9659(1988) ; Powerplant and Industrial Fuel Use Act of 1978, 42 U.S.C. § 8435(1988)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42 U.S.C. § 11046(a)(1)(1988)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43 U.S.C. § 1349(1988) ; Hazardous Liquid Pipeline Safety Act of 1979, 49 U.S.C. § 2014(1988). 거의 모든 환경법률이 시민소송 규정을 두고 있다. Cass R. Sunstein, What’s Standing After Lujan? of Citizen Suits, “Injuries,” and Article III, 91 *Mich. L. Rev.* 163, 163-236(1992), at 165, n. 11.
- 17) 물론 이러한 시민소송 제도는 주 법률에서 먼저 제도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재규 『앞의 책』 98쪽 이하 참조. 그러나 ESA상의 시민소송조항은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112 S.Ct. 2130(1992)사건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ESA상 의회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원고적격을 부여한 시민소송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Harold J. Krent, Ethan G. Shenkman, Of Citizen Suits Sunstein, 91 *Mich. L. Rev.* 1773, 1793-1823 ; 1973, 1793-1823 ; Cass R. Sunstein, id. ; 강재규, 『미국 환경법과 법원』, 249-269쪽 참조.
- 18) 미시건주환경보호법(MEPA)과 미네소타주환경권법(MERA)은 “대기·물·토지·기타 자연자원의 오염·손상·파괴”나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게 선언적 판결, 중지판결 등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시건주법, 미네소타주법의 특징은 원고적격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철폐하였다는 점이다. 그 외 수질정화법(CWA)을 비롯한 다수의 연방환경법률이 법령 위반행위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다룰 수 있는 시민소송조항을 도입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환경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원고적격을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원고적격 자유화 경향을 후퇴시킨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2) 일본

지금까지 법원에서 다룬 환경소송이란, 주로 자연환경을 파괴한 자(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도로, 공항,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에 대한 민사중지소송이 중심이었고, 드물게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거의 진전이 없었으며, 주목할만한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⁹⁾

그러나 판결이 있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소송으로서 유명한 사건으로는 日光太郎杉 소송사건²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① 자연보호를 청구하였던 원고(東照宮)가 승소한 점, ② 개발이 만능이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이 오늘날의 환경보호사상에도 타당할 수 있는 격조높은 자연보호론을 전개한 점, ③ 특히 고등재판소 판결이 대체안을 비교 검토하고,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에 대하여 수준높은 일반론을 전개하였다는 3가지 점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었다.²¹⁾ 그러나 日光太郎杉 판결이 있은 지 20년 이

것이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110 S.Ct. 3177(1990)사건판결과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112 S.Ct. 2130(1992)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19) 北村喜宣, 「公害・環境の行政判例—戦後の歩みと展望」, 『ジュリスト』 제1015호(1993), 258쪽; 研究會, 「公害・環境判例の軌跡と展望」, 『ジュリスト』 제1015호(1993), 227쪽 참조. 또한 그 이유로서는 ① 자연 환경에 대한 파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동경도 쓰레기 소각장 사건(最判 소화 39년 10월 29일 『民集』 제18권 제8호 1809쪽)과 국립보도교 사건(東京地決 소화 45년 10월 14일 『行集』 제21권 제10호 1187쪽)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공공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중지소송 등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사업의 전 과정에 처분성을 의제하여 취소소송으로 다루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사고방식이 판례나 학설의 태도였다는 점, ② 이후에 중지법리가 발전됨으로써, 민사중지소송이 더 많은 구제기회를 제공하리라는 사고가 일반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참조, 芝池義一, 「公共事業と行政訴訟—處分性と原告適格」, 『ジュリスト』 제925호(1989), 108쪽; 大橋洋一, 『公害・環境判例百選』 (1994), 201쪽. 그러나 그 후 민사판례의 전개는 생각하였던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민사법 학자들은 오히려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20) 宇都宮地判 소화 44년 4월 9일 『행집』 제20권 제4호 373쪽; 東京高判 소화 48년 7월 13일 『행집』 제24권 제6호, 제7호 533쪽.

21) 山村恒年, 『公害・環境判例百選』 (有斐閣, 1994), 184쪽; 志村富壽, 『運命の風景—日光があふない』 (日本經濟評論社, 1983) 참조.

상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자연보호를 청구한 원고가 승소한 행정소송은 거의 없으며,²²⁾ 또 日光太郎杉 사건에 대한 고등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재량통제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판결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²³⁾고 한다.²⁴⁾

최근 일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소송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이 가진 이상과 같은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 지방자치법 제24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가 주민소송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주민소송 역시 자연보호소송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²⁵⁾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객관소송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전혀 다른 주민소송제도가 자연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상과 같이 환경소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보호 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연 그 자체를 원고로 하는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우리나라

2003년 10월 15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천성산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을 원고로 하고 자신들을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의 ‘도롱뇽 대

22) 특수한 상황에서 어업권 포기를 무효라고 한 白杵理立訴訟(大分地判 소화 46년 7월 20일 『判例時報』 제 638호 36쪽, 福岡高判 소화 48년 10월 19일 『高民集』 제26권 제4호 365쪽), 栃木市用途地域變更事件 제1심(宇都宮地判 소화 50년 10월 14일 『判例時報』 제796호 31쪽) 등을 들 수 있을 뿐이다.

23) 畠山武道, 畠山武道(淡路剛久·寺西俊一編), 『自然保護の訴訟』,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日本評論社, 1997), 270쪽.

24)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하고, 또 승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등 엄격한 소송요건을 들 수 있고, 원자력소송에서와 같이 전문기술적인 재량문제 등을 든다. 阿部泰隆, 『國土開發と環境保全』(日本評論社, 1989), 272-282쪽. 다수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畠山武道·古城誠·木佐茂男 編著, 『環境行政判例の總合的研究』(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5), 66쪽 이하 참조.

25) 畠山武道·古城誠·木佐茂男 編著, 『앞의 책』, 80쪽 이하 참조.

변인'으로 내세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의 형태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 야생동식물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된 "자연의 권리" 소송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대두된 것이다. "자연의 권리" 소송은 주민의 생명·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전형적 소송유형과는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소송당사자로 해 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 강,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소송들을 필두로 하여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독일의 북해 바다 표범 소송, 일본의 아미미(奄美) 흑토끼 소송).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전혀 생소한 것만은 아니었다. 1998년 낙동강 채두루미의 폐죽음과 관련, 채두루미를 원고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적격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²⁶⁾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롱뇽 소송의 제기가 "자연의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자연의 권리"론의 쟁점

그런데 "권리"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에 대하여 논의할 때, 개별 학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종의 권리개념을 정리한 후, 자연의 권리가 어떠한 차원에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권리개념²⁷⁾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자연의 권리 주체의 문제,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1) 권리주체성

- "자연"의 의미 -

자연의 권리를 논의할 경우, "자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26) 홍준형, 「'자연의 권리' 소송은 가능한가?」 대한변협신문(2004년) 기사 참조.

2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강재규, 『생태주의 환경법』, 101-109쪽 참조.

있다. 자연의 범위에는 아래에 제시한 표²⁸⁾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자연의 범위

최광의의 자연	협의(생물)	① 종을 구성하는 개체 ② 종의 개체군 ③ 종 ④ 류(인류, 조류, 어류 등)	자연물 (협의)	(협의)	(최광의)
	광의	⑤ 무생물(개체 또는 개체군) ⑥ 인공적 자연(농지, 인공림, 공원) ⑦ 지역생태권			

하지만 토양과 같이 무생물과 생물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해양의 경우에도 무생물인 물(水)과 그곳에 사는 생물을 분리할 수 없다.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법과대학의 클래어런스 모리스(Clarence Morris) 교수는 1964년에 발표한 “자연의 법적 권리”라는 논문에서, “새, 꽃, 연못 . . . , 야생생물, 암석, 원시림, 전원의 공기”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광의의 자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톤 역시 그의 논문에서 “자연물”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물에 하천이나 삼림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표의 최광의의 “자연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hrader-Frechette²⁹⁾도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山村恒年, 앞의 『環境保護の法と政策』, 128쪽에서 인용.

29) K. S. Shrader-Frechette, *Environmental Ethics*(The Boxwood Press, 1991); 京都生命倫理研究會 譯, 『環境の倫理(上・下)』(晃洋書房, 1996) 참조.

Passmore³⁰⁾는 자연을 “인간 및 인간이 사육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는데, 이는 광의의 자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자연법칙에 따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때의 자연은 인간과 인공물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자연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톤의 논문에 영향을 받아 시에라 클럽 대 모튼(1972년) 사건에서 내린 미연방대법원의 더글라스 판사의 소수의견도 스톤과 같은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는 “손상(injury)이나 오염 등 학대를 받게 될 무생물”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79년 데이빗 F. 페이브러(David F. Favre)는 헌법에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인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³¹⁾

그런데 1982년 10월의 “세계자연헌장”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자연에 대하여, 인간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자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모든 생명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광의의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돌이나 광물과 같은 무생물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자연자원”, “지구상의 유전적 생명력”, “자연의 계”, “생물 종”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연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과 법인이 모두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지만, 국민과 법인이 누리는 기본권은 기본권이 갖는 성격이나 법인의 성격상 차이가 난다는 것도 역시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권리 역시 인간의 권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를 생각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는, 세대내 배분(남북문제) · 세대간 배분(현재세대와 미래세대)과 같은 인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간의 배분”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유한한 지구상에서 공존하기

30) John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G. Duckworth & Co. Ltd.(1974).

31) Roderick F. Nash, *The Rights of Natu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위한 “적정한 배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과 파괴의 피해(영향)는 먼저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적 약자”에게 미치고, 그 다음 바로 인간에게 미친다. 이와 같이 자연은 인간생존의 기반임과 동시에 정신적·물질적 토대로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식물(자연)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연의 고유한 가치”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의 고유한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자연의 “권리”라고 이야기 할 때에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동물이나 생태계는 도덕적 주체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주체, 자연=객체(수단)라는 권리론과 관련한 근대 서구의 2원론적 사고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자연)은 모두가 생활의 주체이다. 자연의 진화를 통해서 인류가 출현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이 주체, 인간이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권리를 논의할 때에는 이상과 같은 자세를 토대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Ⅲ. 각국의 “자연의 권리” 소송 사례

1. 미국

스톤의 저서인 『수목의 원고적격(Should Trees Have Standing?)』의 출간과 병행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자연을 원고로 하는 대표적인 소송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고,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년 연방대법원은 Sierra Club v. Morton 사건³²⁾에서, 환경보호단체인 Sierra Club의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었다. 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더글라스 판사는 소송의 진정한 당사자는 개발의 대상이 된 협곡 그 자체로서, Sierra Club은

32) 405 U.S. 727(1972).

그 대변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글라스의 의견은 크리스토프 스톤이 주장한 “수목의 원고적격”에 근거한 것이었다. 1973년에는 “희귀종자보호법(ESA)”이 연방법률로써 제정되고, 시민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2) 1978년 희귀종자보호법에서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Palila 새”와 Sierra Club이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동 법률에 따라 다음 해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항소법원도 승소판결을 내렸다.³³⁾

(3) 희귀종자보호법에 따라 섬 올빼미와 Sierra Club이 공동원고가 되어, “섬 올빼미”의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청구한 소송에서, 1991년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사건 명에는 섬 올빼미를 들었지만, 소송당사자로서는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4) 1992년에는 Marbled Murrelet(바다쇠오리)와 Audubon Society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도 연방지방법원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4)의 사례는 자연물과 환경보호단체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보호단체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경우로써, 미국 법원은 그러한 경우 원고를 분리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엘크의 원고적격을 부정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2)–(4)의 사건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조류(鳥)이며, 환경보호단체가 조류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승소의 본안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33)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471 F. Supp. 985(D. Ha. 1979), aff'd, 639 F. 2d 495(9th Cir. 1981). 이 사건은 하와이주가 수렵용으로 주 내의 원생림에 야생의 양과 염소를 방목하여 그 수를 유지시켜 왔지만, 양과 염소가 목초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원생림에 보금자리를 트는 절멸위기종인 Palila 새가 주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에라 클럽 등이 제소하였다. 제1심은 야생동물에 의한 원생림의 파괴는 Palila의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금지하는 “포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였다.

(5) 제4차 “Palila 새” 소송판결에서는 Palila의 원고적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였다. (2)의 Palila 판결에서는 “Sierra Club과 기타 원고들은 본 건 소송을 Palila의 이름으로 제기하였다”, “본 건 소송은 멸종위기 종인 Palila를 위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제4차 소송의 항소법원의 판결은 Palila 자체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즉 판결은 “종의 보존법에 근거한 멸종위기 종으로서 Palila는 그 자신의 권리로 원고가 될 법적 지위와 연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6) 1995년의 Marbled Murrelet사건은 Marbled Murrelet과 환경단체가 공동원고로 되어 민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소송이다. 1995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Marbled Murrelet은 희귀종자보호법상의 보호 종으로서, 『그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이 새가 서식하는 삼림에서 피고회사가 세운 삼림벌채계획은 종의 보존법에서 말하는 “포획”에 해당하여 위법이라 판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는 희귀종자보호법(ESA)에 근거한 시민소송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멸종위기 종인 새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자연의 권리’소송은 이상과 같은 미국의 자연의 권리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³⁴⁾

(1) 아마미노쿠로우사기 소송

이 사건은 골프장 개발을 위한 가고시마현지사의 삼림법에 근거한 산지개발허가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동 지사를 피고로 하여 1995년 2월에 제기되었다. 원고로서는 특별천년기념물로 지정된 4종의 생물 외에 “환경 네트워크 아마미”와 전국 각지의

34) 山村恒年, 『環境法入門』(昭和堂, 1999), 44쪽.

개인 20명이 연명으로 제기하였다. 가고시마 지방재판소는 같은 해 3월 위 각 원고 중 야생생물 4종의 소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결정으로 각하하였다.

“.....동물이 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 등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이상 위 표시(원고명)는 무의미한 기재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원고 중 4명은 소장정정신청을 하여 원고명을 “아마미쿠로우사기 사건 A모” 등으로 정정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원고로 참여한 자가 야생생물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소송은 매스컴이 크게 다룸으로써 전국 각지, 외국으로부터도 수많은 격려와 찬성의 메시지를 받았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일본위원회는 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12월 30일 일본경제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다.

또한 같은 해 6월 초당파의 국회의원 17명이 “쿠로우사기를 지키는 의원 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문화·환경 양청에 독자적인 현지조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개발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2) 오오히시쿠이(큰기러기) 소송

이것은 茨城縣의 오오히시쿠이라는 큰기러기의 일종인 월동지 전역을 조수보호구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쇠퇴하고, 중요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규정에 근거하여 지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현에 대해 지사의 연 수입분 약 2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1995년 12월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도 원고로서 오오히시쿠이 이외 시민도 이름을 연서하여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水戸 지방재판소는 오오히시쿠이를 원고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하였다. 그 후 1996년 2월 소장 각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소 각하판결을 하였다.

“소송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은 인간사회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자연이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자연물의 보호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대변함으로써 비로소 소송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자연물이 존엄하기에 이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의무는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자연물에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판결은 주민소송에 공동원고가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일부 원고의 변론을 분리하여 종국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판결문의 당사자 목록에는 “원고 오오히시쿠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의 변호인단은 소장 각하가 아니라, 오오히시쿠이를 상대방으로 한 각하 판결이므로, 오오히시쿠이의 법적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각하판결조차 필요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 이유에서 “자연물의 보호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대변함으로써, 비로소 소송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이 자연물을 대변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소가 있었지만, 같은 해 4월 동경고등재판소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3) 나나우사기(새앙토끼) 주민감사청구

“빙하기에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나나우사기”가 서식하는 大雪山 국립공원 내에 북해도가 계획하였던 土幌高原道路의 건설에 대하여, 그것은 귀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위법한 재정지출이라고 하여 1996년 7월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사청구가 각하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나나우사기가 원고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

(4) 무쯔고로우(짱둥어) 소송

長崎縣 諫早灣에서 굴을 파서 등지를 틀고 살아가는 무쯔고로우와 지역주민이, 만의 간척을 통한 농지조성공사의 중지소송을 제기하자, 1996년 4월 소송을 원조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자연의 권리 입법권(立法權)의 침해를 근거로 한, 공사중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우리나라

- 도롱뇽 소송 -

도롱뇽 소송이란 2003년 10월 15일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터널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다. 11월 28일 울산 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는 도롱뇽과 그 친구들, 그리고 내원사와 미타암이 제기한 터널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1차 심리가 열렸고, 그 이후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2004년 4월 9일에는 이 두 건의 환경소송사건에 대한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이 있었다.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남 양산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도롱뇽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 중 도롱뇽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도 2004년 11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³⁵⁾에서, 도롱뇽에 대해서는 각하, 도롱뇽의 친구들과 미타암·내원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³⁶⁾

재항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역시 2006년 6월 2일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환경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이러한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5)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 공사착공금지가처분결정 및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2(병합) 공사착공금지가처분결정.

36) 이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2004년 11월 29일자 “지울’과 ‘도롱뇽친구들’은 과연 미쳤을까?”, 기사(강재규 기자) 참조.

도롱뇽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4. 앞으로의 전망

앞에서도 검토하였지만 미국에서는 ESA(회귀종자보호법)을 근거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은 조류 등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생태중심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미국의 환경사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 제도나 환경사상의 토대에 있어서도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항고소송이나 주민소송 등 현행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권리” 소송 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소송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에 원고가 승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일본의 아마미노쿠로우사기소송에 대한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의 1심판결에서도 입증되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유사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좌절감을 심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마미 자연의 권리소송에서 가고시마 지방재판소가 제시한 판결 이유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법 제도나 환경사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록 아마미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아마미의 자연을 대신하여 수행해온 역할을 평가하였고, 야생생물 등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현행의 소송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법개정방향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미 자연의 권리소송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이러한 “자연의 권리” 소송은 인

간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더욱이 인간의 주관적인 권리의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주관소송이 중심이 되어 있는 현행 소송제도 아래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 소송이 현행 소송제도 아래서는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소송의 제기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소송은 자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크게 전환시키고, 환경보호 단체나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연의 권리” 소송에 필요한 법리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것은 이를 입증하는 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소송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자연의 권리” 소송과 같은 자연보호소송이 주민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고, 자연생태계나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환경사상이나 이에 기초한 다양한 법리에 대한 철저한 탐구가 뒤따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권리” 소송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제화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자연의 권리”소송의 가능성³⁷⁾

1. 개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에서도 야생동식물 등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을 원고로 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연의 권리소송’은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였던 예전의 소송과는 전혀 다른 소송목적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자연보호소송³⁸⁾이라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연보호소송인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

37) 강재규, 「자연을 위한 환경법인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2004. 1. 녹색연합), 69-72쪽; 오마이뉴스 2003년 10월 17일자, “권리 찾아 인간법정에 서는 천성산 도롱뇽” 기사 참조.

38) 이에 대해서는 강재규, 「자연보호소송」, 『부산법조논집』 2007 제2호(2007. 1), 61-75쪽.

되는 이유와 배경³⁹⁾, 그리고 현행 환경보호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자연의 권리” 소송 제도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환경법의 성격 및 보호법익과 환경소송제도

(1) 환경법의 성격과 보호법익

- 공익적·객관적 성격과 생태적·지구적 보호 -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에 비해서 객관성과 공익성이 훨씬 강한 법이다.⁴⁰⁾ 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이익보호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전체의 이익, 나아가 생태계 자체의 이익, 지구의 이익보호에 중점이 두어진 고도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띤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화석연료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프레온가스의 국제적인 이용규제,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과 국내법 등은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 그 중에서도 현재세대의 인류의 이익보호만을 염두에 두고 정립된 규범이 아닌 것이다. 즉 생태계 자체의 보호를 염두에 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규범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둔 민법이나 행정법과 같이 개인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인류, 나아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주의(자연주의) 사상에 토대를 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2) 현행 환경소송제도의 문제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제도는 민사·행정소송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의 위법한 행위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만(자연인과 법인 등)이 소송을 제기

39) 이에 대해서는, 강재규, “자연의 권리” 소송의 실현을 위한 방안,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30쪽 이하; 동, 앞의 책 『생태주의 환경법』, 90-96쪽 참조.

40) 환경법의 객관법적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는, 芝池義一, 『環境法の性格』, 『自治研究』 제1권 제3호(한국지방자치연구소, 1991), 6쪽 이하 참조.

하여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침해된 자신의 이익을 다룰 수 있는, 이른바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주관소송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행정소송의 예를 들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도로건설공사허가를 하였을 때, 이를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처분성), 또 건축법이나 환경관계법을 위반하여야 하며(위법성),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원고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 정상부분을 소유하는 개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한 골프장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더라도 이러한 공사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를 중지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소송요건이라 하는데, 이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거나 문전박대 당하게 되며, 사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란 다투가 바늘구멍통과하기만큼이나 까다로운 것이다.

즉 어떤 법률이 국민들의 일반적 이익(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행정청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때, 행정청이 법령이 부여한 여러 의무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 일반인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므로,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할 공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하여 보호를 방치하는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법률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러한 소송구조를 통해서도 개인 간의 이익충돌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는 법이 행정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제도는 공익보호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관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운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 환경법을 위반하여 환경이익(공익)을 침해하였을 때, 현행의 인간중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주관소송제도를 통해서도 결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생태익·지구익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고, 현행의 소송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의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법의 성격에 타당하고 이러한 환경법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자연의 권리” 소송제도의 도입 가능성

(1)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환경법의 성격과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성질에 타당한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법에 위반하여 환경과피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환경이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도롱뇽소송과 같이 자연동식물도 법정에서 원고의 자격이 부여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설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환경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환경윤리학이나 환경 철학, 나아가 환경 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법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지금껏 진화되어왔듯,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 역시 역사적으로 발전·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로 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라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 기관(행정청)에게도 피고의 지위를 인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는 반드시 권리의 주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법에서 환경과피행위자에 대하여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누구”에는 자연동식물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동식물은 사람처럼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이익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공익대표자(환경단체, 환경관련 학자, 환경법상 규제행정청 등)가 동식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 가능성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이러한 새로운 소송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는 법원사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의 권한을 정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쟁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며, 또 법률적 쟁송이 아니더라도 법원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5조가 규정하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제도가 가진 성격에 맞게 소송당사자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항고소송을 포함하여 기관소송, 민중소송 등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를 자연인이나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등 권리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과 같은 기관도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에서 겪는 당사자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이른바 환경보호를 위한 민중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의 창설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법제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에서도 살펴본 바이지만 현행소송제도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소송제도를 취하고 있다. 소송요건 역시 엄격하여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또한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침해된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의 주체도 원칙적으로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가 될 수 있어, 자연동식물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소송의 경우 실체법과 절차법의 목적이 상호 괴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행정이나 행정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나, 실체법인 행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과 같은 주관소송이 중심이어서 공익보다는 오히려 사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환경법은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다. 화석연료규제나 프레온가스 규제,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 환경법의 이념은 생태주의 또는 자연주의(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호법의 역시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달리 인류익(미래세대 이익 포함), 생태익, 지구익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소송 중심의 현행 행정소송제도로는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 환경법의 이념이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생태주의(자연주의) 사상에 토대를 둔 자연의 권리 소송과 같은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소송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권리의 범위와 주체(소송당사자)의 확대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환경법 역시 환경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 역시 법 위반자에 대해 기소를 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규제권자인 행정기관이나 기소권자인 검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에서처럼(사적법무장관이론) 개인이나 환경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행정기관 등에만 맡긴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제도나 현재 입법화를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국민소송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규, 「자연보호소송」, 『부산법조논집』 2007 제2호(2007. 1).
_____, 『생태주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2).
_____, 『미국환경법과 법원』 (세종출판사, 1998).
_____, 「자연을 위한 환경법인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4. 1, 녹색연합).
_____,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환경사상』 (지산, 2001).
알도 레오폴드(윤여창·이상원 옮김), 『모래땅의 사계』 (도서출판 푸른 숲, 1999).
이상돈, 『환경정책기본법』 (아세아문화사, 1985).
천병태, 『미국행정법』 (부산대학교출판부, 1992).
허범, 『법정에 선 나무들』 (아르케, 2003).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홍준형, 「자연의 권리' 소송은 가능한가?」 대한변협신문(2004년).
岡島成行, 『アメリカの自然保護運動』 (岩波新書).
關根孝道, 「日米“種の保存法”の比較法的考察」, 『環境法學の生成と未來』 (信山社, 1999).
鬼頭秀一, 『自然保護を問いなおす』 (ちくま新書, 1996).
籠橋隆明(淡路剛久·寺西俊一 編), 「自然の權利」訴訟と市民の權利」,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 (日本評論社, 1997).
北村喜宣, 「公害·環境の行政判例-戦後の歩みと展望」, 『ジュリスト』 제1015호 (1993).
山田隆夫, 「奄美自然の權利訴訟の提起するもの」, 『自由と正義』 제49권 제10호 (1998. 10).
山村恒年, 『環境法入門』 (昭和堂, 1999), 44쪽.
_____, 『公害·環境判例百選』 (有斐閣, 1994).
_____, 『環境保護の法と政策』 (信山社, 1996).
森島明譯, 『野生のうたが聞こえる』 (森林書房)
阿部泰隆, 『國土開發と環境保全』 (日本評論社, 1989).

- 研究會, 「公害・環境判例の軌跡と展望」, 『ジュリスト』 제1015호(1993).
- 畠山武道, 畠山武道(淡路剛久・寺西俊一 編), 「自然保護の訴訟」, 『公害環境法理論
の新たな展開』(日本評論社, 1997).
- 畠山武道・古城誠・木佐茂男 編著, 『環境行政判例の総合的研究』(北海道大學圖書刊
行會, 1995).
- 芝池義一, 「公共事業と行政訴訟 - 處分性と原告適格」, 『ジュリスト』 제925호(1989).
- , 「環境法の性格」, 『自治研究』 제1권 제3호(한국지방자치연구소, 1991).
- 志村富壽, 『運命の風景-日光があふない』(日本經濟評論社, 1983).
-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허남혁 옮김
『래디컬에콜로지』(이후, 2001).
-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자작나무, 1999).
- John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G. Duckworth & Co. Ltd.(1974).
- R. F. Nash, *The Rights of Nature :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1993).
- Zygmunt J. B. Plater and et e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a Coursebook on
Nature, Law, and Society*,(West Pub. Co. 1992).
- Cass R. Sunstein, What's Standing After Lujan? of Citizen Suits, "Injuries," and
Article III, 91 *Mich. L. Rev.*(1992).
- Harold J. Krent, Ethan G. Shenkman, Of Citizen Suits Sunstein, 91 *Michi. L. Rev.*
1773, 1793-1823.
- K. S. Shrader-Frechette, *Environmental Ethics*(The Boxwood Press, 1991); 京都生
命倫理研究會 譯, 『環境の倫理(上・下)』(晃洋書房, 1996) 참조.
- John Passmore,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G. Duckworth & Co. Ltd.(1974).
- Roderick F. Nash, *The Rights of Natu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Abstract>

Nature's Rights

Kang, Jae Gyeu

Christopher D. Stone teaches law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 Los Angeles. The publication of "Should Trees Have Standing?" in 1972 w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environmental ethics. Stone is author of *Earth and Other Ethics*.

Stone proposes giving legal rights to natural objects. While such an extension of rights may seem unthinkable, he points out that such extensions have always seemed unthinkable before they occurred, and that there are currently a number of inanimate legal persons, such as railroads and corporations.

Stone summarizes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have legal standing and how natural objects currently do not possess legal standing. He proposes an extension of the legal guardianship model for legal incompetents, and explains some of the advantages of such a strategy.

Can an animal or a plant raise a lawsuit to a court?

Environmental law is the regul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that is the profit of mankind, the Earth, an ecosystem, etc.

However, the current lawsuit system is the system that was prepar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profit.

Therefore, I think that an existing lawsuit system canno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for the purpose that environmental law aims at.

So I insist that an existing lawsuit system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an environmental law effectively.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Nature's Rights

3. Case Study on Nature's Right Litigation in Several States
4. The Possibility of Nature's Right Litigation
5. Conclusion

주 제 어 자연의 권리, 도롱뇽, 원고적격, 크리스토프 스톤, 환경소송, 보호법익